

(별표 5) (2002. 10. 14, 2003. 2. 17, 2003. 9. 9, 2003. 10. 30, 2004. 8. 25, 2006. 2. 9, 2006. 11. 8, 2007. 5. 15 개정)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업무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수원(주)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한수원(주) 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허용된 경우 서명)신고서 1통
4.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허용된 경우 서명) 1통
5.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써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허용된 경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요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의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요령 제2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요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령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요령 제3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요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한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현장설명일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007. 5. 15 본조 신설)

제 4 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2006. 11. 8 개정)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2. 입찰서(소정서식)
3.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2003. 9. 9 개정)
5.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해당시) (2003. 9. 9 개정)
6.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한수원(주)이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발주자는 입찰공고 등에 제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007. 5. 15 본조 신설)

제 5 조 (관련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요령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요령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06. 11. 8 개정)

제 7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본 조에서는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또는 그 금액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이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요령 제72조 제6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3. 2. 17, 2006. 2. 9, 2007. 5. 15 개정)

1.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4년이내에 요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07. 5. 15 신설)

2.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2007. 5. 15 신설)

② 입찰자가 입찰서의 유효기간만료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서를 철회·취소한 경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3. 2. 17, 2006. 2. 9 개정)

③ (2003. 2. 17 삭제)

④ (2003. 2. 17 삭제)

⑤ (2003. 2. 17 삭제)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2007. 5. 15 신설)

제 8 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07. 5. 15 개정)

③ 요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④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명서 등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2007. 5. 15 신설)

제 9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2006. 11. 8 개정)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10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서는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수원(주) 소정의 우편입찰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일시까지 한수원(주)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한수원(주)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제출된 입찰서는 한수원(주) 계약담당직원에 의하여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 기재 및 확인 날인되어 개찰시까지 개봉되지 아니하고 보관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주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수원(주)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내역입찰의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11. 8, 2007. 5. 15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1. 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 (2002. 10. 14 본조 신설, 2004. 8. 25 삭제)

제 13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14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2003. 2. 17, 2006. 2. 9 개정)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계약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를 포함한다) 또는 재정경제부 회계에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내역입찰의 집행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2004. 8. 25, 2006. 11. 8 개정)
12.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2004. 8. 25 개정)
13.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2006. 11. 8 개정)
15. (2002. 10. 14 신설, 2004. 8. 25 삭제)
16. 요령 제65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2007. 5. 15 신설)
17.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발주자가 정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을 한도에 미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2007. 5. 15 신설)

제 15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한수원(주)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변경, 가격초과, 협상결렬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언제든지 이 입찰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공사범위·준공일정·입찰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 변경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철회, 변경,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 16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한수원(주)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최초로 입찰참가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수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4. 8. 25 개정)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③ 한수원(주)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2004. 8. 25 개정)

④ 한수원(주)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차상위의 행정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2004. 8. 25 신설, 2006. 11. 8 개정)

제 17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요령 제65조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2004. 8. 25 개정)

② 한수원(주)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요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③ 한수원(주)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요령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요령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2002. 10. 14 신설, 2004. 8. 25 삭제)

제 18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수원(주)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요령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9 조 (공사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착공일자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사 감독부서에 착공신고서와 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수원(주)은 계약서의 착공일자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정한다.

제 20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수원(주)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1 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요령 제7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2003. 2. 17 삭제)

제 22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요령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요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다. (2006. 11. 8 개정)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3. 10. 30 본조 전면개정]

제 23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 (이의신청)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한수원(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위배된 사항

제 25 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요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수원(주)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03. 2. 17, 2004. 8. 25 개정)

